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재정경제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외경제 이슈가 다양한 지경학적 사안이 결부된 복잡·다변화된 이슈로 확대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심의·조정 필요한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집행력 제고 및 회의의 유연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규정 정비가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회의 개최 주기 현행화(안 제3조제2항)

“정례회의 개최주기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월 2회에서 월 1회로 정비함.

나. 회의 구성원 추가(안 제4조제1항)

“K-컬처의 확산으로 대외경제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회의의 구성원에 포함함”

다. 회의 참석범위 탄력적 운영 근거 규정 도입(안 제4조 제6항)

“최근 다양한 지경학적 이슈가 결부된 신종·복합 의제로 대외경제 이슈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 성격

에 따라 참여 구성원 범위를 조정 가능하도록 운영 근거 마련”

라. 회의 정족수 규정 정비(안 제6조 제4항)

“제4조 제6항에 따라 참석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해당 회의의 참석자를 회의의 구성원으로 보아 정족수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함”

마. 자료 제출 근거 규정 도입(안 제9조)

“회의 운영의 실효성 제고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문화함”

바. 이행 관리 규정 도입(안 제11조)

“심의·조정된 안건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 상황 관리 규정을 명문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회”를 “1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4조제6항에 따라 회의의 참석범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참석자를 해당 회의의 구성원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자료 제출) 회의는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하여 관계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의 이행을 확인한다.

② 관계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의의 종류) ① (생 략)	제3조(회의의 종류) ① (현행과 같 음)
②정례회의는 매월 <u>2회</u> 개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 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u>1회</u> ----- ----- -----.
제4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u>외교부장관, 농림</u> <u>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u> <u>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u> <u>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u> <u>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u> <u>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u> <u>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u> <u>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u> <u>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u> <u>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u> 구성한다.	제4조(회의의 구성 등) ① ----- ----- ----- <u>외교부장관, 문화체</u> <u>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u> <u>장관</u>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u> <u>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u> <u>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u> <u>참석하게 하거나, 참석 범위를</u>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
③ (생략)

<신설>

제9조 (생략)

<신설>

제10조 (생략)

<신설>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조제6항에 따라 회의의
참석범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참석자를 해당 회의의 구성
원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9조(자료 제출) 회의는 안전과
관련되는 부처와 협의하여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전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안전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
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의 이행을 확인한
다.

② 관계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 및 사유

	<u>를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u> <u>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	
연 락 처	(044) 215 - 7613